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59

발의연월일: 2021. 11. 05.

발 의 자: 金炳旭・김승수・김형동

백종헌 • 서일준 • 신원식

유경준 • 이명수 • 이헌승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장애인 중 일부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, 이러한 시설 거주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한계 및 운영 특성상 사회적 환경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, 최 근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가 활발 히 이어지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에 있어 가족이 더이상 돌봄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, 자립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, 최대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주거서비스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지원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

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"주거서비스지원"을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기반을 적절하게 확보, 유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함(안 제2조제3호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 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11조).
- 마.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주거서 비스지원인증원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 인증원을 설치함(안 제15조).

- 바. 주거서비스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,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 등 주거서비스지원 체계를 규정함(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).
- 사. 전문인력에 의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 와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장애인주택의 설치·운영 근거, 인증, 운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(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).
- 아.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·폐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3조 및 제34조).

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독립 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 다.
- 2. "장애인주택"이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주택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
- 3. "주거서비스지원"란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기반을 적절하게 확보, 유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4. "장애인거주시설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.

- 제3조(기본원칙)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,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.
 -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.
 -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,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4조(장애인의 권리) ①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형태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형태를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- ③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.
- 제5조(자기결정권의 보장)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 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, 타인과의 교류,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.
 -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 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파단하여서는 아

니 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같은 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"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"이라 한다)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장애인 가족의 협력의무)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,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,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축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

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정책의 결정·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 거서비스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
 - 3.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전환에 관한 사항
 - 4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주거서비스지원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 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) 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(이하 "통합주거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
 - 4.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전환에 관한 사항

- 5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 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- ④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·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통합주거지원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통합주거지원위원회에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⑥ 통합주거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,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⑦ 통합주거지원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)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장 애인이 이해하기 쉽고,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주택 보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·임차자금 또는 개·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·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.

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체계

- 제15조(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) ① 국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(이하 "중앙주거인증원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실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(이하 "지역주거인 증원"이라 한다)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

-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주거인증 원을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지역주거인증원을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주거인증원을 설치·운영할 수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주거인증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관할 구역의 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 인증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, 장애인재활상담사, 특수교사, 주거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장애인이 적합한 주거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 원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의 임무) ① 중앙주거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의 전 과정 업무시스템 구

축 및 운영

- 2. 제26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 및 인증 기준 수립
- 3. 지역주거인증원에 대한 지원
- 4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
- 5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
- 6.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주택 전환 컨설팅
-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② 지역주거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관할 지역 내 제27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 인증
- 2. 관할 지역 내 제26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에 대한 운영 자문
- 3.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
- 4.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이용적격성 조사 및 대상 자 선정
- 5.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
- 6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한 지역별 자원 확보 및 홍보
-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(장애인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

- 체는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제18조(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) ①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거서비스지원 대상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여건 및 주거서비스지원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욕구조사의 대상, 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주거서비스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) ① 지역주거인증원은 관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은 장애인거 주시설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,

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,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그에 알맞은 지원서비스가 시 행되어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방문한 지역주거인증원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·협박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주거서비스지원의 신청) ① 장애인은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은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의 신청은 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애인 개인의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주거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"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역주거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의 지원대상, 개인별 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

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21조(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) ① 지역주거인증원은 주거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이용적격성을 심사하여 주거서비스지 원 대상자를 선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) ① 제21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이용적격성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역주거인증원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역주거인증원은 주거서비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·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) ① 지역주거인증원은 개인 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주거서비스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, 그 범위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지원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용적격성 조사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, 해당 장애인에게

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.

- ③ 지역주거인증원은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변경·수정을 지역주거인증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 및 절차,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장애인주택의 종류 및 설치·운영 등

- 제24조(장애인주택의 이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이용을 통하 여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 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선택에 필 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·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장애인주택의 종류) 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장애인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전문요양주택: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장애인에게 거주·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 택
 - 2. 집중돌봄주택: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게 거주·요양·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 원하는 주택
 - 3. 지원주택: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인지·정신적 장애인에게 거주·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 원하는 주택
 - 4. 자립주택: 기능제한으로 인하여 간헐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게 거주·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
 - 5. 단기지원주택: 단기간의 휴식 및 일시적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에 게 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

- 6. 생활주택: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에 의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와 다 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주택(이하 "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" 이라 한다)을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을 설치·운영 하려면 해당 센터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을 통하여 제27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내 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

하다.

-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정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수 있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, 주택 이용자의 자산과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·신고·변 경신고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 인증) ①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을 운영 하려는 자는 지역주거인증원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는 지역주거인증원이 수행한다.
 - ③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인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 운영의 개시 등) 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.
 - ②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

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주거서비스지원 센터등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1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장 애인주택 이용자가 다른 장애인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
- 2. 장애인주택 이용자가 이용료·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
- 3. 보조금·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 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
- 4. 그 밖에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
- ④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주거서비스지원 센터등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
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- 1.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
- 2.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
- 3. 그 밖에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-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의 개시·중 단·재개·폐지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장애인주택 이용절차) ① 장애인주택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장애인주택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을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4에 따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의 장애인주택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주택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주거인증원에 이용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장애인주택 이용 적격성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 본인부담

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④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,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,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계약은 장애인주택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⑥ 장애인주택 이용자가 장애인주택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장애인주택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. 이 경우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과 이용 적 격성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의 의무) ①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, 인권이 침

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②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거주서비스 지원, 요양 지원, 건강 지원, 지역사회생활 지원,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장애인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1조(감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장애인주택 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운영상황·장부, 그 밖의 서류를 조사·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32조(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폐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개선, 사업의 정

- 지,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제26조에 따른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때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·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때
- 3.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
- 4. 주거서비스지원센터등의 회계 부정이나 장애인주택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,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
- 5.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
- 6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 등

제33조(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·폐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전환 과정 및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은 향후 20년 이내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장애인거주시설은 해 당 시설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기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인건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, 예산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⑤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
- 제34조(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) ① 사회복지법인은 지역사 회주거서비스 전환 및 시설이용자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설을 해산할 수 있 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

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
- 2.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
- ⑤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,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시설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

제5장 벌칙

- 제35조(벌칙) ①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지역주거인증원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·검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2. 제3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